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5,671,925	17,270,158
일반회계	571,716,342	17,151,490
특별회계	3,955,583	118,667
기타특별회계	3,955,583	118,66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25,287	33,759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32,273	968
주차장사업특별회계	2,798,023	83,94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,221,765천원으로 한다.  
(일반예비비 4,900,000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,321,765천원)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한다.